

학번별 졸업인증제 운영 지침

제정 : 2021.01.11.

개정 : 2022.04.01.

개정 : 2023.02.07.

[2022년 8월 졸업대상자 이후 적용]

1. 학번별 졸업인증제

학 번	졸업인증제 내용	비 고
2015학년도 이전 학번	① 졸업을 위한 필수이수과목 없음	가. 졸업이수학점은 120학점임.
2016학년도 이후 학번	① 졸업을 위해서는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가. 졸업이수학점은 120학점임. 나. 학부(과) 및 학번별 필수과목은 『2. 학부(과)별 필수이수과목』의 표에 따름.

※ 공인영어성적이나 전산세무2급 이상의 자격증 취득 등을 요구하는 제40조의2 제2항의 졸업인증제는 2021년 2월 졸업사정부터 폐지

2. 학부(과)별 필수이수과목

경영세무정보학부 필수이수과목		
2016 ~ 2020 학년도 학번	1학년 1학기 개설	경영경제수학 / 법학입문 / 의사소통능력및수리능력 / 회계원리
2021학년도 이후 학번	1학년 1학기 개설	회계원리
세무행정과 필수이수과목 (학번 무관)		
	1학년 1학기 개설	회계원리
부동산감정평가과 필수이수과목 (학번 무관)		
	1학년 1학기 개설	회계원리

공기업경영과 필수이수과목 (학번 무관)

1학년 1학기 개설	회계원리
------------	------

회계세무정보학부 필수이수과목

2016 ~ 2020 학년도 학번	1학년 1학기 개설	경영경제수학 / 법학입문 / 의사소통능력및수리능력 / 회계원리
	1학년 2학기 개설	부가가치세법 / 소득세법 / 원가회계 / 중급회계1 / 중급회계2
	2학년 1학기 개설	고급회계 / 관리회계 / 법인세법 / 법인세법심화 / 중급회계3
2021학년도 이후 학번	1학년 1학기 개설	회계원리
	1학년 2학기 개설	부가가치세법 / 소득세법 / 원가회계 / 중급회계1 / 중급회계2
	2학년 1학기 개설	고급회계 / 관리회계 / 법인세법 / 법인세법심화 / 중급회계3

회계세무정보과 / 회계세무정보계열 필수이수과목 (학번 무관)

1학년 1학기 개설	회계원리
1학년 2학기 개설	부가가치세법 / 소득세법 / 원가회계 / 중급회계1 / 중급회계2
2학년 1학기 개설	고급회계 / 관리회계 / 법인세법 / 법인세법심화 / 중급회계3

○ 경과조치

- 2020년 8월 이전 졸업대상자(2019년도 후기졸업 이전 졸업대상자) 중 “제40조의2 제2항의 졸업인증제 미충족”을 사유로 졸업유보 처리되었으나 그 외 졸업조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2020학년도 2학기 이후 정규학기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신청 교과목 이수여부와 무관하게 등록학기 경과 후 졸업한다.
- 경영세무정보학부 소속으로 2020년 8월 이전 졸업대상자(2019년도 후기졸업 이전 졸업대상자) 중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에 개설된 필수과목을 미이수하여 “필수과목 미이수”를 사유로 졸업유보 처리되었으나 그 외 졸업조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2020학년도 2학기 이후 정규학기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신청 교과목 이수여부와 무관하게 등록학기 경과 후 졸업한다.
- 학부(경영세무정보학부, 회계세무정보학부)에서 폐과에 의한 전과로 학과(세무행정과, 부동산감정평가과, 공기업경영과, 회계세무정보과)로 전입하여 졸업하는 경우 졸업사정에 학과의 필수이수과목 기준을 적용한다.